



촬영을 거절할 권리, 공표를 거절할 권리

A는 도매시장에서 신발을 파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다. 어느 날 A는 방송국 PD로부터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찍으려고 하는데, 당신을 촬영해도 되겠나”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긍정적인 내용이라서 얼굴도(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나갈 거다”라는 설명도 들었다. A는 흔쾌히 인터뷰 등 촬영에 협조했는데, 방송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너무 뜻밖에도 방송은 자녀의 배필을 직접 찾는 부모들에 대한 것이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부모는 자녀의 짝을 찾기도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A는 부모의 도움 없이 빠듯하게 사느라 결혼도 기약 없이 미룰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으로 편집됐다. A의 일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자부심은 온데간데없었다. A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얼굴 아래로는 그대로 노출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A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 A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제가 한다고 했겠어요? 이걸 우리 부모님께도 상처가 되는 방송이었어요.” A는 언론사에 계속 항의했지만, 언론사가 묵묵부답이어서,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전화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아뿔싸, A가 언론사에 항의하는 사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정 신청 기간이 지나 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는 정말이지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꽤 상세히 법원 소송에 대해 안내를 했지만,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매일매일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할 여유도 없다면, 한숨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출연자의 동의가 아예 없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출연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도되었다면 이것 역시도 문제가 된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로 인한 피해 사례는 꾸준한데, 얼마 전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고 동의를 얻었음에도, 정작 방송은 조기교육의 폐해를 다룬 사안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등에 합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법원 판결 중에는 언론사가 생기발랄한 대학 신입생 환영회 컨셉으로 취재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의 통과리레’라는 제목으로 신입생 환영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도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촬영 및 방송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보도가 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음성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초상권을 예로 들면, 초상권에는 촬영을 거절할 권리, 공표를 거절할 권리가 포함되는데, 설령 승낙을 얻고 촬영한 사진이라도 함부로 공표하면, 촬영거절권 침해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공표거절권은 침해되어 결과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즉, 동의 당시의 초상권자가 신뢰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 및 방법으로 공표가 이루어졌다면, 초상권자의 공표거절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가령 촬영에는 동의를 얻은 언론사가 정말 완벽하게 모자이크 및 변조 처리를 하여 도저히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보도를 한다면, 이때는 보도 내용이나 방법이 동의권자의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도 기본권 침해를 피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 시청자(독자)가 아니라 보도 대상자의 지인이 알아볼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한 모자이크 처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실제로 종종 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당연히게도 취재 의도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취재 의도를 속여서 협조를 구하거나 혹은 촬영 도중 방송 내용이 변경된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은, 누군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언론의 소명이 더 아름답고 바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소명에 다다른 한 걸음 한 걸음도 진실 되고 무거워야 하는 게 아닐까.